

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

☞ 대한민국「공직선거법」은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◆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중에 누구든지 자유롭게『공직선거법』제58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,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는 제218조의14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인터넷 홈페이지, 방송광고, 방송연설, 정보통신망 이용, 인터넷 광고, 전화, 말

◆ 다만, 아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『공직선거법』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·제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«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»

관련법	대 상	비 고
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※ 외국국적 취득자(시민권자) ○ 미성년자(19세 미만인 자) ○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○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○ 한국국제협력단·한국국제교류재단·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○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○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·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등 	

※ 모든 단체(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)는 그 단체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☞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[재외선거 홈페이지\(http://oknec.go.kr\)](http://oknec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안내 1부.

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안내

2012년, 재외국민과 함께

새로운 선거역사를 씁니다



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

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에 따라
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?

- 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공관마다 설치·운영하는 민사적 법외제 선거관리기구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1. 10. 14 ~ 2012. 5. 11 까지 7개월간 운영됩니다.
- 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,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2명,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을 합하여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- ▶ 모든 위원의 신분은 비상근 명예직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선거홈페이지(<http://ok.nec.go.kr>)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1 모집대상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

2 모집인원 : 재외공관(분관·출장소 포함)마다 2명

3 자격요건 :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에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

-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
-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
- 선거운동이 금지된 재외동포 관련 재단의 임직원인 사람

4 응모기간 : 2011. 6. 30(목)까지

5 응모방법 :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(hyun5467@nec.go.kr)

- 지원서(철러서진 포함) 1부
-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(여권사본 포함) 1부

6 선발방법 : 서류 및 적격 여부 심사

7 기 타

- 제출서류 서식은 재외선거홈페이지(<http://ok.nec.go.kr>)에서 다운로드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결과는 e-mail로 개별통보

문의 : +82-2-503-0635/0648/0649
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정책과)

 중앙선거관리위원회
<http://ok.nec.go.kr>

